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박선원·이수진·김병주
서영석·박민규·허성무
전용기·신정훈·유동수
조정식·노종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,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,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

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,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, 국방·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대체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,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은 양여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 신설).

나. 기부 대 양여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,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하더라도, 그 초과분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 제4항 신설).

다.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, 양여할 재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

경우에는, 대체시설 기부 전에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라. 사업시행자가 양여 대상 재산의 위험물 제거 또는 토양오염 정화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, 해당 비용을 양여재산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3 신설).

마.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,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, 도로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4 신설).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”을 “기부 대 양여사업”으로 한다.

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(이하 “기부 대 양여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액(價額)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비용 상당액은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에 따라 양여하고 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반재산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.

④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액이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2

항에 따른 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기부채납 전 양여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 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.

1.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양여할 재산이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
 2. 해당 재산의 양여로 인하여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
-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한 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양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의3(기부 대 양여사업의 오염정화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하여 양여하기로 한 재산에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국가의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에

다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실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합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양여가격에서 그 비용을 뺄 수 있다.

제12조의4(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양여하기로 한 재산에 대하여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 허가와 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 및 제4항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

중인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(이하 “기부 대 양여 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이 양여하려는 일반재산의 가액(價額)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는 그 비용 상당액은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에 따라 양여하고 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반재산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.</u> ④ <u>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양여받는 일반재산의 가액이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과 「공유재</u>
<u><신 설></u>	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2항에 따른 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⑤ ----- 기부 대 양여사업-----

-----.

제12조의2(기부채납 전 양여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양여하기로 한 재산의

<신 설>

일부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.

1.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
양여할 재산이 국유재산으로
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
경우

2. 해당 재산의 양여로 인하여
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이용
또는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지
아니할 것

② 제1항에 따라 양여한 후 사
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시
설의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아니
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양여
받은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여야
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여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
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의3(기부 대 양여사업의 오
염정화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
부 대 양여사업에 대하여 양여
하기로 한 재산에 「토양환경보
전법」에 따른 국가의 정화책임
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, 토
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
다만, 사업시행자가 위험물, 토

<신 설>

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실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합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양여가격에서 그 비용을 뺄 수 있다.

제12조의4(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양여하기로 한 재산에 대하여 기존 국방·군사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

다.
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
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
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 불
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
위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
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 허
가와 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
의 축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
받아야 한다.